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의 기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공간,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의 신고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제2조에 따라 공간,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협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영 제14조제2항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4조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재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우수기업 등의 선정 방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및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기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등”이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등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등은 홍보물, 방송 및 신문 등 언론매체에 우수기업 선정 사실을 공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전문회사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본금(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백만원				설립 연월일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기업현황	공간				
	시설				
	장비				
조직형태	[] 개인 [] 법인 [] 기타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 ([]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열람일	처리기간	90일
------	-----	--------	------	-----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운영예정일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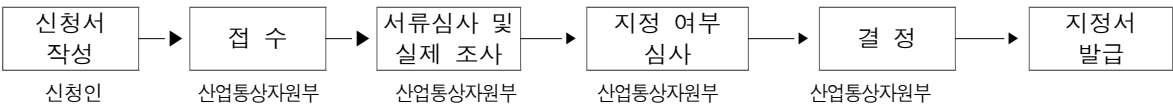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2.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1호부터 4호의 요건에 대한 현황(증빙자료 포함)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열람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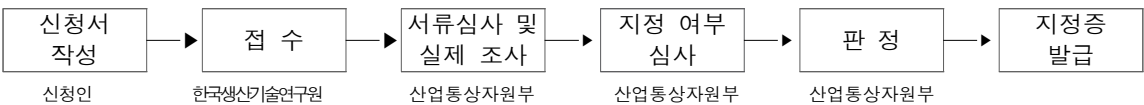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3. 교육 인력·시설의 확보 현황 4. 연간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본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호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4. 주소: (전화번호:)
5. 사무소 소재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